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8,940,809	15,868,224
일반회계		526,245,878	15,787,376
특별회계		2,694,931	80,848
	기타특별회계	2,694,931	80,848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500	4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0,137	1,2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9,184	8,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7,533	2,326
	주차장특별회계	1,707,089	51,2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589,488	17,68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09,75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 (2) 재해대책비

제 6 조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